

「신용카드 법인회원약관」 개정 안내

항상 신한카드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.

신용카드 법인회원약관이 개정되어 2024년 2월 29일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.

개정 안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개정사유
약관 내용	<p>제 5조(유효기한 및 갱신발급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갱신 또는 대체발급, <u>거절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</u>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, 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, 전화, 전자우편(E-MAIL), 휴대폰 메시지(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,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. 또한,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(SMS 등)로 대체전송됩니다. 이하 같습니다.), 팩스(FAX),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·거절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,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거나,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거절됩니다.</p> <p>(신설)</p> <p>⑦ (생략) <제7항 신설에 따라 기존 제7항 항내림 제7항 → 제8항></p> <p>⑧ (생략) <제7항 신설에 따라 기존 제8항 항내림 제8항 → 제9항></p>	<p>제 5조(유효기한 및 갱신발급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갱신 또는 대체발급, 거절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, 거절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, 전화, 전자우편(E-MAIL), 휴대폰 메시지(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,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. 또한,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(SMS 등)로 대체전송됩니다. 이하 같습니다.), 팩스(FAX),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·거절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이의제기 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,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거절됩니다합니다.</p> <p>1.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사실 2.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회원이 제1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</p> <p>⑦ 갱신 또는 대체발급의 거절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의 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제6항에서 정하는 통지 방법으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 드립니다.</p> <p>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</p> <p>⑨ (현행 제8항과 같음)</p>	<p>여신금융업권 불공정 약관 변경명령에 따른 개정</p> <p>공정위 시정요청 유형 9. 고객의 작위·부작위에 대한 의사표시 간주조항</p>

신용카드 법인회원 약관 개정(案) 신·구조문 대비표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개정사유
약관 내용	<p>제7조(카드이용정지 및 해지)</p> <p>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(중략) 사전 고지 없이 카드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(사유 발생 당일 고지)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 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</p> <p>6. (생략)</p> <p>7. 회원의 고의·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 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</p> <p>8.~11. (생략)</p> <p>②~④ (생략)</p> <p>⑤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(중략) 카드사는 별도의 안내 없이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회원의 고의·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 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</p> <p>⑥~⑫ (생략)</p>	<p>제7조(카드이용정지 및 해지)</p> <p>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(중략) 사전 고지 없이 카드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(사유 발생 당일 고지)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카드에 의한 거래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 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회원의 고의·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 하거나 카드사 및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</p> <p>8.~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(중략) 카드사는 별도의 안내 없이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회원의 고의·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 하거나 카드사 및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</p> <p>⑥~⑫ (현행과 같음)</p>	<p>여신금융업권 불공정 약관 변경명령에 따른 개정</p> <p>공정위 시정요청 유형 2. 추상적·포괄적인 계약 해지 조항</p>

신용카드 법인회원 약관 개정(案) 신·구조문 대비표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개정사유
약관 내용	<p>제 22조(카드의 분실·도난 신고와 보상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카드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(분실·도난신고 시점 이후 발생 분은 제외한다)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회원 또는 사용자(이하 본항에서 총칭하여 ‘회원’이라 함)의 고의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2.~6. (생략)</p> <p>④~⑥ (생략)</p> <p>제 23조(위·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 22조(카드의 분실·도난 신고와 보상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카드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(분실·도난신고 시점 이후 발생 분은 제외한다)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회원 또는 사용자(이하 본항에서 총칭하여 ‘회원’이라 함)의 고의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2.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~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23조(위·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여신금융업권 불공정 약관 변경명령에 따른 개정</p> <p>공정위 시정요청 유형 1. 접근매체 분실·유출·도난 시 사업자 면책조항</p>

신용카드 법인회원 약관 개정(案) 신·구조문 대비표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개정사유
부칙	<p>제 1조(시행일) (2021. 9.25) 이 약관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. 다만, <u>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4</u>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며, <u>제23조제7항</u>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 및 포인트 적립분부터 적용합니다.</p> <p>제 1조(시행일) (2023. 8. 1) 이 약관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 다만, <u>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4</u>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며, <u>제16조제7항</u>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 및 포인트 적립분부터 적용합니다.</p>	<p>제 1조(시행일) (2021. 9.25) 이 약관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. 다만,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19조제1항제4호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며, 제16조제7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 및 포인트 적립분부터 적용합니다.</p> <p>제 1조(시행일) (2023. 8. 1) 이 약관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 다만,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4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며, 제16조제7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 및 포인트 적립분부터 적용합니다.</p>	<p>조 번호 변경 및 약관 조항 명확화</p> <p>내용중복에 따른 삭제</p>
	<p>제 1조(시행일) (2024. 2. 29) 이 약관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.</p>	<p>제 1조(시행일) (2024. 2. 29) 이 약관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.</p>	<p>약관변경에 따른 부칙 반영</p>